

case  
3

## 전동 모터 (제8501.10호)

### 요약

사례명	<b>전동 모터</b> NAFTA 물품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H301619 (2018.11.06.)
사실관계	멕시코에서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 전동 모터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제8503호)와 완제품의 HS Code(제8501호)가 4단위 수준에서 상이하므로 멕시코산으로 판정</p> <p>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멕시코에서 행해진 조립 공정은 3개의 하위 어셈블리(중국산)를 단순 조립(simple assembly)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국산으로 판정(제301조 무역제재 대상)</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02(19 C.F.R. § 102)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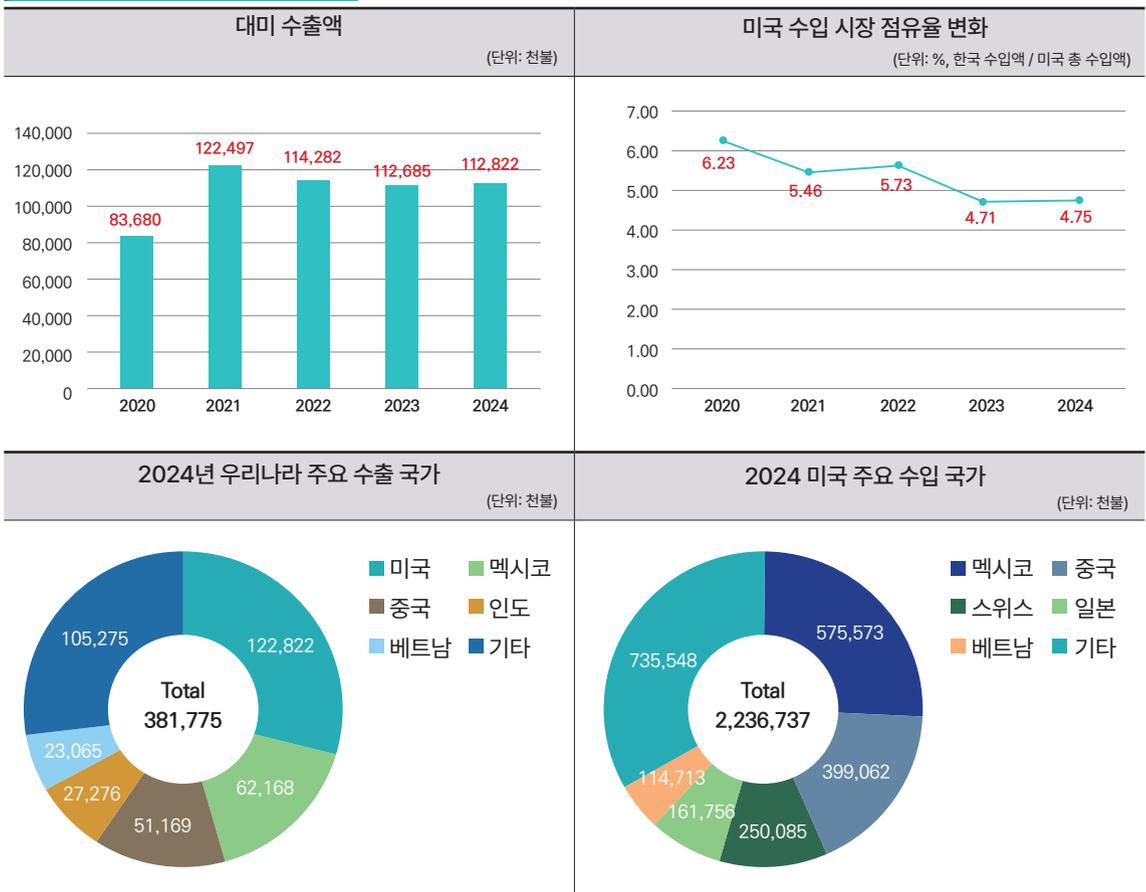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501.1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2.8 ~ 6.7%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시장정보

제8501.1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사 례 명** [전동 모터] NAFTA 물품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H301619 (2018.11.06.)

**사실관계**

<b>요청자</b>	Johnson Electric	
<b>제품</b>	<b>제품명</b>	• 직류(DC) 전동 모터(1999-1020656EP)
	<b>구성</b>	• 스테이터(Stator) 또는 후면 하우징 (중국산) • 로터(Roter) 또는 아마추어 어셈블리 (중국산) • 엔드캡 어셈블리(End Cap Assembly) (중국산)
	<b>용도</b>	• 전자식 도어록 작동을 위한 전동 모터
	<b>원재료 HS Code</b>	• 개별 부품(제8503호)
	<b>완제품 HS Code</b>	• 전동 모터(제8501.10호)

### 제조과정



- 상세과정**
1. 중국산 스테이터 또는 후면 하우징(stator or rear housing), 로터 또는 아마추어 어셈블리(rotor or armature assembly), 엔드 캡 어셈블리(end cap assembly)를 멕시코로 수입
  2. 멕시코에서 조립(assembly) 공정을 거쳐 전동모터를 생산
  3. 최종 완제품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CBP 『19 C.F.R. § 134.1(b)』에 따르면, NAFTA(혹은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CBP 『19 C.F.R. § 102』에 정의된 별도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19 C.F.R. § 134.1(b)

“Country of origin” means the country of manufacture, production, or growth of any article of foreign origin entering the United States. Further work or material added to an article in another country must effect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order to render such other country the “country of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t; **however, for a good of a NAFTA or USMCA country, the marking rules set forth in part 102 of this chap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 102 Rules) will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 CBP 『19 C.F.R. § 102.11(a)』에 따르면, NAFTA(혹은 USMCA)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에 따라 결정함
  - (1)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2)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3)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Part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 ☑ 전동 모터의 경우,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어 (3)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CBP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제8501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판정 결과

- ☑ 외국산 재료의 HS Code(제8503호)와 완성품의 HS Code(제8501호)가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므로 멕시코산으로 판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USTR은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해 조립(assembly) 공정이 행해진 경우, 수입된 부품들이 물리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질(character)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 관련 판정 및 분석

- 원재료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도(use)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조립과 관련하여 단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 여부를 평가하며, 개별 부품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를 검토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판정 결과

- ☐ 중국산 부품들은 이미 사전에 용도가 결정되어 있었으며, 멕시코에서의 조립 공정은 중국산 3개 하위 어셈블리들을 큰 복잡성 없이 단순 조립(simple assembly) 한 것에 해당함
  - 그러므로, 멕시코에서의 공정이 용도의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 조립(simple assembly)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 결론

- ✓ NAFTA(혹은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멕시코산으로 판정함.
- ✓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멕시코에서의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아 단순 조립인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산으로 판정(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 Ⅲ 시사점

- CBP Ruling HQ H301619는 2018년 7월 25일 NY N299096을 수정한 것으로, 대중 무역제재 조치인 제301조가 실행된 2018년 7월 6일 이후, 제301조 적용을 위한 CBP의 원산지판정 기준이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사례임
- ① NY N299096에서 CBP는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적용을 위해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인 CBP 『19 C.F.R. § 102.11(d) 및 102.14(o)』에 근거하여 전동 모터의 원산지가 중국산인 것으로 판정함
- ② 이후, HQ H301619를 통해 원산지표시는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 『19 C.F.R. § 102.11(a) 및 102.20』에 의해 멕시코산으로 기재해야 하며,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중국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비원산지재료를 조립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조립 공정의 복잡성 및 원재료와 최종 제품 사이의 명칭, 성질, 용도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CBP Ruling NY N299096 (2028.07.25.), <https://rulings.cbp.gov/ruling/N299096>
- CBP 19 C.F.R. § 120,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02>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